

퇴직공제금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

12월 1일 ~ 12월 31일

신고방법

공제회 방문, 우편, 팩스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로
자진신고서 제출 및 부정수급액 반환

-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: www.cw.or.kr/hanaro

- 모바일앱 : 플레이스토어, 앱스토어에서 “건설근로자공제회” 검색

자진신고 혜택

배액반환 및 형사처벌 면제

신고대상 부정행위

허위근로

건설 현장에서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, 퇴직공제금을
지급받게 하거나 지급받은 행위

(예) 친인척을 신고한 후 퇴직공제금 수령 등

허위퇴직증빙

건설업 퇴직 증명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 등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도와준 행위

(예) 재직증명서 허위 발급 등

타인 퇴직공제금 취득

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는 행위

(예) 소속근로자 신분증, 통장사본 도용 등

기타

퇴직공제 적용대상자가 아닌자가 퇴직공제를 적립하여
지급받은 행위

(예) 정규직, 1년 이상 계약직(상용직) 등

※ 부정수급행위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
(부정수급액의 10/100, 최대 50만원)

 **건설근로자공제회**
Construction Workers Mutual Aid Association



대표번호 : 1666-1122